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상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

□ 건설사고 신고제도

- (신고대상) 건설공사*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(건설기술진흥법 제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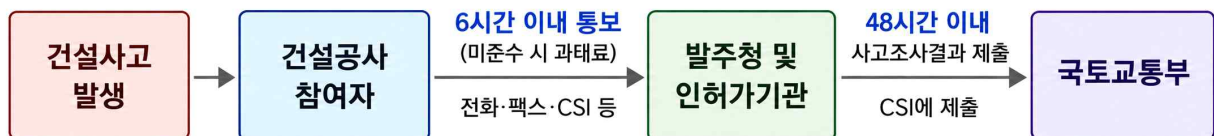
*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

**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,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

- (건설사고 통보)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*가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게 통보(CSI·전화·팩스 등, 6시간 이내)

* 건설사업자, 건설엔지니어링, 주택건설등록업자 등

- (조사결과 제출)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(CSI, 48시간 이내)



※ 건설공사 참여자가 사고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(300만원이하)

< 건설사고 통보 관련 규정>

○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

(제1항)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**건설공사참여자**(발주자 제외)는 **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통보**

(제2항)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**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**

○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

(제1항) CSI·전화·팩스,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

○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부 고시)

(제60조)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**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**

□ 건설사고 신고 절차

○ 신고주체 : 건설공사 참여자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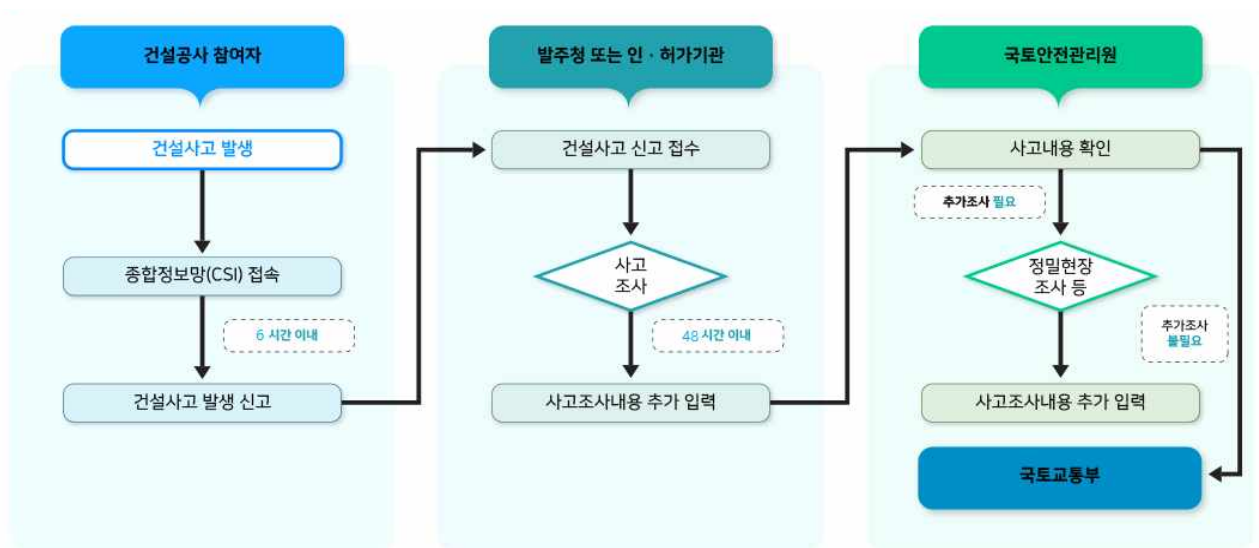
* 건설사업자, 건설엔지니어링, 주택건설등록업자 등

○ 신고방법

- (온라인)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을 통해 통보(PC, 모바일)

*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.go.kr) 접속화면에 "건설사고신고" 에서 신고가능

- (기타) 전화,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도 통보



구 분	신고주체	통보기한	방법	작성방법
최초 사고신고	건설공사 참여자	6시간 이내 발주청또는인·허가 기관장에게 통보	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, 전화, 팩스 등	필수항목 입력 후 "통보" 클릭
자체 사고조사	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	48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	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	공사명 선택→작성→필 수항목 입력→통보

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(정의)

4. “**건설공사**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 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다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

○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의2(건설사고의 범위)

법 제2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.

1.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.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

○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7조(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)

-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**건설공사 참여자**(발주자는 제외한다)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**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**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**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**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**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| 2. 사고발생 경위 |
| 3. 조치사항 | 4. 향후 조치계획 |

○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91조(과태료)제3항제16호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6.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(발주자는 제외한다)

○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60조(최초사고신고), 제61조(사고조사 등)

제60조(최초사고신고) **건설공사 참여자**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**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**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(현장주소)
 2. 사고발생 경위
 3. 공사명
 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

제61조(사고조사 등)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은 **48시간 이내**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고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제60조 각 호의 사항
2. 공사현황
3.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
4.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
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